

광명시의회의장의조례공포지침

제정 1992. 8. 31 예규 제15호

1. 조례 공포번호 부여 방법

광명시 조례공포대장에 등재하는 누년 일련번호를 먼저 부여하고 의회의장이 조례공포건수를 따로 누년 일련번호로 하여 부여하되 그 사이를 “—”로 연결한다.

(예) 조례공포대장상 제300호 까지 부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장이 최초로 조례를 공포하는 때

“조례 제301—1호”

(예) 조례공포대장상 제460호 까지 부여되어 있는데 의회의장이 5번째 조례를 공포하는 때

“조례 제461—5호”

2. 공포문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.

광명시의회에서 의결된 ○○○조례(중 개정조례)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포한다.

광명시의회의장 ○○○

(서명)

20 년 월 일

광명시조례 제○○○—○호

광명시○○○조례(중 개정조례)

광명시○○○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○조(○○) _____

제○조(○○) ① _____

② _____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직인

주1) 제정조례의 경우에는 제정문을 두지 아니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